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 해당 연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및 민간의 산업재산 정보 수요에 관한 사항
2. 공공 및 민간의 산업재산 정보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민간의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개발·상용화 현황에 관한 사항
4.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허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목적·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제5조(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①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이하 “연계표”라 한다)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계표를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새로운 산업·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연계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지표의 조사·분석)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이하 “산업재산 통계·지표”라 한다)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과 관련된 산업, 경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의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재산 통계·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4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의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7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유망기술 발굴, 기술이전 및 국내외 기술·산업동향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2. 연구인력의 산업별·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3.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방법
4. 그 밖에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에게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로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고시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
3.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방위산업기술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과제 기술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략기술
7.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국가전략기술

8.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한 기술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절차”란 다음 각 호의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법률의 소관 국가행정기관
2. 정부조직법 제14조에 따른 대통령비서실
3. 정부조직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안보실
4.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5. 정부조직법 제20조에 따른 국무조정실
6. 정부조직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검찰청
7. 정부조직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경찰청
8.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9. 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

③ 제2항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국가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지침에 따라 자체 보안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보안지침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해당 국가행정기관이 내부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지침의 통보가 불가능하다고 이의신청을 할 경우 해당 국가행정기관의 보안지침 통보를 예외

로 할 수 있다.

제9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제외)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산업재산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2. 제4항 각 호의 산업재산 진단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

③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지정된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미래유망기술의 발굴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의 산업재산진단

4. 산업재산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진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산업재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축·관리하는 산업재산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 정보의 구조 및 성능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체계
3. 산업재산 정보의 표준화 준수
4. 산업재산 정보값 오류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품질관리는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생성하기 위한 자료의 취득·처리 및 처리된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한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품질 진단·평가 대상 산업재산 정보
2. 품질 진단·평가의 추진체계
3. 품질 진단·평가의 절차 및 기간
4. 품질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5. 그 밖에 품질 진단·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 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2. 산업재산 정보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
3.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
4.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5.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한국특허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략 지원 관련 사업
2.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관련 사업
3. 외국에서의 산업재산 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4. 국가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5. 산업재산 전략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출판, 행사, 홍보
6. 그 밖에 산업재산진단 및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2항 각 호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수요 및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법 제11조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3. 법 제13조에 따른 통계·지표의 조사·분석
4. 법 제14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5.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
6.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7.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8. 법 제21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력
9. 법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특허정보원
2. 법 제25조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3.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4. 「발명진흥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5. 「발명진흥법」 제51조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 「민법」 제32조 및 제43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
7.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③ 특허청장은 법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 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의 구축·관리·운영 업무와 제14조에 따른 산업재산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특허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수집·생성하거나 이를 조사·분석·가공·연계하는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업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누설 또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 「발명진흥법」 제51조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 「민법」 제32조 및 제43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

⑤ 특허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산정보 활용 업무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등에 관한 업무를 법 제25조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기준: 2024년 8월 7일
2. 제12조에 따른 산업재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24년 8월 7일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재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 제1호	지정 취소			
나. 산업재산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 제2호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단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진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그 밖에 진단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제3항 제3호	경고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이 법의 의무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재산진단기관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100	250	500
나.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100	250	500
다.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3호	100	250	500